2024년도 하반기 감사관 회의

2024년도 하반기
반부패·청렴 중점 추진과제

2024. 9.

국민권익위원회

순 서

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여건 및 현황 ····· 1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필요성 ···· 3
2.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 5

Ⅱ. 반부패·청렴 정책 3대 중점 과제 ····· 8

1. 지방 일선 현장의 불공정·부패 관행 개선 ····· 10
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 13
3.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 16

Ⅲ. 2024년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과제 19

1. 현장에 기반한 반부패 행위규범 정비·운영 ····· 21
2. 교육·협력을 통한 공직사회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 30
3.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 ····· 33
4. 국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35
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 ····· 38

순 서

6. 공정·신속한 신고사건 조사 및 관리 ····· 40

7.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41

[참고자료] ····· 44

1. ’24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 46

2.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 ····· 47

3. ’24년 하반기 청렴연수원 교육 운영 일정 ····· 48

[붙 임] ····· 50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 52

2. 부서별 업무담당자 ····· 57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여건 및 현황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필요성

□ 독립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방현장

○ 감염병·대형사고·자연재해 등 **위기의 상시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22.1.) 등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속 강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과 의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인명피해**와 **경제·사회적 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침

- '22년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간 대등·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

  * 단체장직 인수위 제도화, 지방정부간 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 신설, 지방의회의 인사권 및 자율·책임성 강화 등을 규정

○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 '23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렴도 향상이 필수

《 대통령 말씀 》

▸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3.9월, 지방시대 선포식)

▸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4.1월, 대통령 신년사)

○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는 국민이 **정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

- 지방정부는 민생경제 악화와 지역산업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 대응해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지방정부의 청렴·반부패**는 민생 정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본 요인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에서 **거래비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 영향

※ 세계은행 보고서(2007)에 따르면, OECD회원국 국부의 81%가 청렴, 신뢰, 윤리 등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

□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

○ '23년 종합청렴도 결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는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지방 토착 부패사건**이 잔존

-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낮고*, 부패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적극적 개선 필요**

* 종합청렴도 평가모형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부패경험률 등 여러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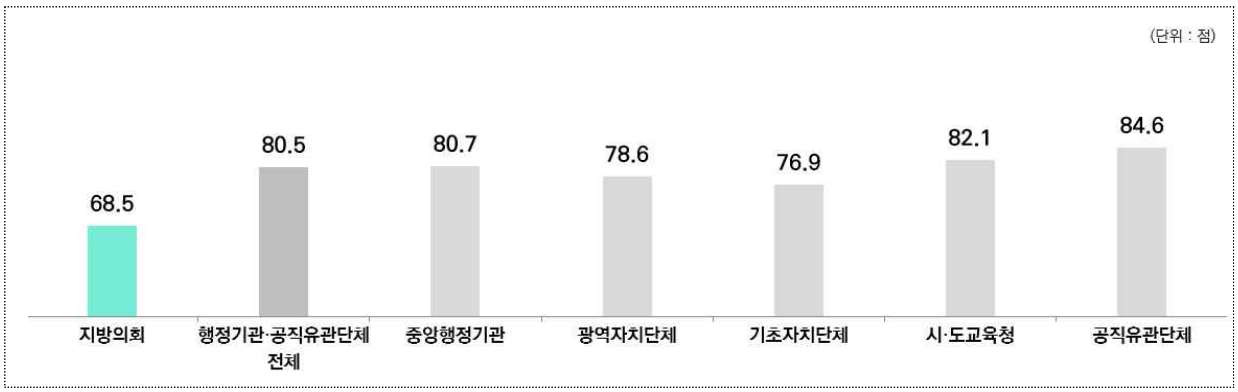

○ 민선 8기 중반을 지나는 전환점에서 국가청렴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반부패·청렴 역할에 대해 공유·논의** 필요

※ 권익위는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22년 하반기에 광역·기초자치단체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지방현장과 소통한 바 있음('22.9월)

국가경쟁력과 지방경쟁력 제고·도약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권익위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

2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 지방현장의 부패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관련 규범 정비

○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불공정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행적 토착비리 가능성 차단

※ 정부 출범 이후 '22년 7월부터 전 지자체 **자치법규 전수 평가 추진 중**
('22) 79개 기초자치단체 → ('23) 7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 ('24) 86개 기초자치단체

※ '24년 상반기 86개 기초의회 자치법규를 평가해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을 위한 1,411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권고

○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415개 대상) 자체 **채용규정의 법령·상위 지침 위배·누락 사항 개선**을 통해 규정 흠결로 인한 채용비리 예방

※ '23년 전수조사 결과, 중앙공공기관(232개, 126건), 기타공직유관단체(156개, 142건) 대비 지방공공기관(437개, 555건)의 주의·경고 적발이 많아 취약

□ 지방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제도 운영

○ **(실태조사) 반부패법령 제도운영** 및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공직자의 **규범 이행력 제고** 및 **반부패행위규범 내재화** 유인

- **(제도운영 실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행위규범 운영*** 및 기관별 **공공재정 환수·관리 제도 이행**** 실태점검 추진

* 매년 전체 법 적용 대상기관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실태 점검

** 반기별로 기관별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점검

- **(취약분야)** 지방 공무원·의원의 행위규범 위반 및 지방정부의 예산·사업 관련 **부패 취약분야를 실태조사 해 선제적 개선** 추진

【'24년 지방현장 취약분야 실태조사 사례】

- 지자체 상수도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약 124억원) 현황 실태('24.4월)
- 지자체 공무원의 위험수당 부당집행(약 6억 2천만 원) 실태('24.6월)
- 지방세 징수포상금 방만운영 등 지방일선의 재정 누수 취약분야(추진 중, ~24.9월)
-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 등 국외출장 관련 실태(추진 중, ~24.12월)

○ **(청렴도 평가)** 전체 지방정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청렴노력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현장에 대한 청렴도 평가 강화**

- **(평가대상 확대)** 그간 기초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일부만 평가했으나, '24년부터 **전체 광역·기초의회의 청렴도를 종합평가**

※ 지방의회(광역·기초) 평가 대상 : ('23) 92개 → ('24) 243개

- **(평가내용 강화) 우수 반부패 시책 공유·확산**(지자체·교육청), 이해충돌방지제도 및 갑질 근절 등(지방의회) **관련 지표 신설·강화**

※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경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모형 적용

※ 지방의회 노력도 지표 : ('23) 7개 과제, 12개 세부지표 → ('24) 8개, 18개

○ **(청렴컨설팅)** 지방현장의 '24년 **컨설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지방의회**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유형 다양화**

*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4·5등급)을 대상으로 권익위, 청렴도 우수기관(멘토기관), 전문가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지원

※ ('23년) 총 24개 중 지방현장 관련 12개 기관(지자체 단일 유형) → ('24년) 총 24개 중 지방현장 관련 16개 기관(지자체 11, 교육청 2, 지방의회 3으로 유형 다양화)

○ **(청렴교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법정 **청렴교육 이수 관리** 및 **맞춤형 청렴교육 제공**

※ 지방의회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 및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1월), 지방의회의원 대상 반부패 행위규범 등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배포(~10월)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지역 토착비리 근절 유인

○ **(신고 활성화)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즉각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감시 기능 활성화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신고(5~7월), 교통안전 위협 공익침해행위 신고(6~7월),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 신고(6~7월) 등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71개→492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 **폐지** 등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정비

반부패 · 청렴 정책
3대 중점 과제

1 지방 일선 현장의 불공정·부패 관행 개선

◇ 국민 **일상 생활 접점에서 발생하는 부패 관행 근절**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 현장의 반부패·청렴 수준 개선

□ 지방 일선 현장의 부패취약분야 집중점검

○ **(취약분야 집중점검)**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수당 부당수령**,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태** 등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점검 실시

【주요 점검 사항】

· **(위험근무수당 부당수령)** 위험업무에 직접·상시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 점검 및 시정 조치**

※ 12개 지자체 대상 조사 및 부당 수령 환수 등 조치, 실태조사 미실시 기관(231개 지자체)에 자체 조사 요청(~12월)

·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여행사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보고서 대필 등 **국외출장 관련 불공정 현황** 실태 점검(서면 및 현장) 실시(~12월)

○ **(반부패행위규범 실태조사)** 지방 현장의 **재정 누수 취약분야** 및 **이해충돌 빈발 분야** 관련 **반부패 행위규범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안내

※ **(행동강령)** 청렴도 저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지방세 징수포상금 방만운영, 계약 관련 이권개입** 등 지방 재정 누수 취약분야 점검·안내(~9월)

※ **(이해충돌)** 지방의원 및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실태, 의원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현황 등 집중 점검·안내(~9월)

○ **(공공재정 환수 실태점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후속 점검 실시** 및 **미이행 처분에 대해 이행토록 권고**

※ '이행실태관리 실적' 제출 내역을 평가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에 감점 반영(최대 3점)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불공정 요인 개선

○ **(자치법규 개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기관운영, 사업추진(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평가·개선권고(6월), 집행기관 평가 중(11월 권고 예정)

※ ('22) 79개 기초자치단체 → ('23) 7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24) 86개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전 지자체 자치법규 **전수 평가 추진 중**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주요내용】

· **(지방의회)**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출장비·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등

· **(기관운영)** 공용차량 관리 및 공개규정 강화,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자 제재 강화,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징수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금 제외 등

· **(사업추진)** 시·도립 예술단원 공개모집 및 전형위원 심사를 통한 채용, 공공건설 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 확대, 지역축제 개최성과에 대한 평가 규정 마련 등

○ **(우수사례 홍보)** 자치법규 평가·개선으로 국민부담 완화, **예산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 및 **해당 우수사례 홍보·확산**

※ (예시) 불분명한 지역축제 지원규정 삭제 및 사후평가제 도입 등으로 무분별한 지역축제 관련 예산낭비 차단

○ **(이행점검·독려)**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이 지난 기관 대상 **이행점검**(정기) 및 **이행 저조 기관 독려, 현장 컨설팅** 등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개선권고 조치기한 및 이행점검 일정 >

계	'22년	'23년		'24년
평기기관	79개 시·군·자치구	17개 광역시·도	61개 자치구	86개 지방의회
조치기한	'23.6월	'24.3월	'24.8월	'25.3월
이행점검	'25. 상반기	'25. 상반기	'24.9월	'25.4월

※ '22년 및 '23년 평가기관은 '25년 상반기 정기 이행 점검 실시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

○ **위험근무수당 자체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24.12월까지, 해당기관)**

○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료**(집행부 동반) **요구 시 제출 ('24.12월까지, 전 지자체)**

< 반부패행위규범 실태조사 관련 >

○ 이해충돌 방지제도 **지방의회 점검 결과 관련 사후조치 협조(대상 지방의회)**

-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권익위에 결과 통보 및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등

○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결과 관련 사후 조치 협조**(대상 지방의회)**

< 공공재정 환수 실태점검 관련 >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처분 관련 자료 미제출 기관 협조(해당 기관)**

※ '24년 상반기 부정수급 제재처분 현황 제출 요청(~8.19.까지)

○ 후속점검을 위한 요청 시 자료제출 협조**(해당 기관)**

○ 점검결과 미흡분야 이행 권고 시 이행**(해당 기관)**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관련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 내부지침, 매뉴얼, 방침서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출**(86개 기초자치단체)**
- 개선권고안 의견조회시, 개선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한 내 회신**(86개 기초자치단체)**

○ 개선권고 **이행현황 점검에 따른 협조**

- 이행점검표의 충실한 작성 및 기한 내 회신**(17개 광역 시·도 및 61개 자치구)**

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 **차질 없는 평가 이행**과 **공정한 결과 도출**로 각급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예방 노력 지원,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체계)** 부패인식과 개선노력, 실제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의 영역**으로 구성

-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부패실태** 평가(최대 10%)

청렴체감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약 22만명)·내부직원(약 8만명)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 ('24년) 외부·내부 각 9개 항목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24년) '추진체계-실적' 2개 영역의 총 12개 지표,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체계 적용, 각급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추진 기반 조성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자체적발 제외,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대상)** 16개 유형, **71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47), **지방자치단체**(243), **교육청**(17), **공기업**(32) 및 **준정부기관**(55), **지방의회**(243)는 매년 전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은 **격년제**

합계 (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공사공단)		광역	기초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Ⅰ (시)	Ⅱ (군)	Ⅲ (구)
718	25	22	17	75	82	69	17	32	55	34	34	13	17	75	82	69

* (공통모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특화모형) 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 하반기 평가 차질 없이 이행, 연내 발표로 반부패 노력 지원

○ **(평가)** 3개 **영역별 일정**에 따라 **평가 진행**

- **(체감도)** 외부 민원인, 내부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8~11월)

  ※ 전화·온라인(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 **(노력도)** 기관별 **평가지표 이행실적**(~9월) 취합 및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정량·정성평가** 결과 등 반영(~12월)

  ※ 정량지표 1차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관 이의신청·검토(10~11월)

- **(부패실태)** 기관 **징계현황**, 기소·판결 등 **부패사건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정량·정성평가**(전문가) 실시(11월)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유형은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 사건만 감점 적용, 심층분석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은 현행 평가방식대로 산정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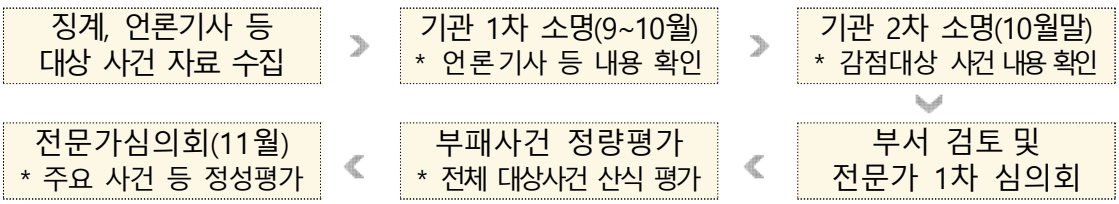

○ **(현지점검)** 기관의 **신뢰도 저해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9~10월)

※ 설문조사 명부, 실적보고서 등 기관 제출자료, 호의적 응답 유도 및 표본 관리 행위,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집중 점검

○ **(발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대국민 공개**, 기관에는 세부 평가결과를 별도 제공(12월 예정)

- 종합청렴도 결과는 **대국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필요시 **국무회의 보고**

※ 평가 대상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기관별 평가결과를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우수시책 사례를 발굴해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반부패 정책 국외연수** 등 기회 제공

[협조 요청 사항]

○ 자료 제출·보완, 소명, 이의신청 등 **평가일정 반드시 준수·이행 (~11월, 평가 대상기관)**

- 설문조사 명부 보완(~9월),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10월초) 및 1차 정량평가 이의신청(10월 예정), 부패사건 소명(~11월),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12월) 등

○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11월, 평가 대상기관)**

- 호의적 응답 유도, 표본관리 행위, 실적 조작, 자료제출 비협조 등

○ **하반기 현지점검 협조(9~10월, 현지점검 대상기관)**

- 자료 등 준비사항 원활히 협조(점검 대상기관 및 일정은 별도 안내·협의)

○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 등 후속조치 이행(12월, 평가 대상기관)**

- 발표 14일 이내에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12월~), 공개실적은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25년)

3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적발**과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예방**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 공공부문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 **(전수조사)**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23년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 점검(2~10월)

- **(조사대상) 필수조사*** **569개** 기관 및 **재량조사**** **817개** 기관

* 기재부·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 발생기관 및 '23년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채용절차 위반이 지적된 기관 등

- **(조사방법)** 감독기관 조사와 위원회 주관* 조사 병행 실시

* 위원회는 감독기관 부재 기관(24개), 채용비리 의혹 발생 기관 대상 집중 조사 실시, 감독기관이 조사대상 과다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 협조 요청 시 조사 협조 예정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실시

* 수사 의뢰 즉시 업무 배제,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조치

**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867건 위반사례 적발 】

■ 주요 위반사례

·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기획팀장에 최종 임용

·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

·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

·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 위반

·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 위반

·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 위반

○ **(제도개선 이행점검)**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도개선 권고**(’23.3)’ 관련 **이행점검** 실시(4분기)

- ’23년 중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채용 관련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고한 사항**(공정채용 기준의 자체규정화 등) **반영 여부** 등 조사

※ 청렴도 평가 관련 실적 제출(10월 중) 이후 미이행기관 대상 실태조사 예정

※ ’23년도 이행점검 결과(’23.12월 기준) : 공정채용 기준(31개 항목)을 70% 이상 반영한 기관은 총 401개(72.9%)

[협조 요청 사항]

○ ’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적극 협조(지자체·일부교육청)**

- 산하 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실시 및 결과 회신(~10월), 전수조사 후속 조치(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이행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도개선 권고 이행**

- 공정채용 기준(31개 조문) 자체 규정 미반영 기관의 경우, 조속한 규정화 및 공정채용 절차 준수 요망
- 이행점검 관련 자료제출 등 요청 시 협조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협조(해당기관)**

- 피신고기관인 경우, 자료제출·현지조사 등 요청에 적극 협조
-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인 경우,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2024년도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과제

1 현장에 기반한 반부패 행위규범 정비·운영

1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제고

◇ **합리적 해석기준** 및 **효율적 제도운영 방안** 제시로 **규범의 실효성 제고**
◇ 실태조사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강화**

□ 기준 및 절차 정비

○ **(운영지침)**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행위기준별 세부 점검·관리 절차** 등을 반영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 개정**(8월)

- 개정된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표준안 안내·배포**(권익위 → 공공기관)

【주요 개정 내용】

① **소속기관장의 신고·신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치 사항을 통보**하도록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

②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등에 대해 '계속 수행' 조치(법 제7조제2항)를 하는 경우 필요한 **사후 확인·점검 절차 및 방법** 규정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관련 **'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서식 별도 마련 및 제출 내역에 대한 **점검·보완 방법** 규정

④ **직무 관련 외부활동**(법 제10조제2호)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 마련(단, 교수·연구원의 학술·연구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에서 허가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⑤ 법에 따른 **의무와 주요 절차가 운영지침에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규정

○ **(업무편람)** 유권해석 및 위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빈발 질의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업무편람 반영·배포**(11월)

※ 쟁점사항 발생 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 해석기준 운영

□ 현장 점검 및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

○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족채용 제한 등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시(9~12월)

- 지방의회를 대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기관별 점검 결과 통보(~9월)

○ **(유권해석·신고처리)** 각급 기관의 **법 해석·적용 관련 문의** 및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법 위반신고의 신속·공정한 처리**(연중)

【주요 위반사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사례)** 지자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가족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사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A의 배우자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공직자 A는 이를 알았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가족채용이 제한됨

□ 교육·홍보 강화

○ **(교육)**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실시

- **(맞춤형 교육) 기관 유형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직접교육 실시(연중)

※ 지방의회, 국립대학교, 민간위원 포함 위원회 등

- **(권역별 설명회)**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제도 개선사항 안내 및 유의사항 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9월)

○ **(홍보)** 법 인지도와 규범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

- **(공직자)** 의무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시리즈'** 제작·배포*(분기별) 및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12월)

* 주요 취약 분야를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권익위 블로그 등 배포

- **(국민)** 법 시행 2주년 계기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중점 정책사항 **홍보 리플릿, 홍보 물품** 등 제작·배포(연중)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전 공공기관)**

- 현재까지 운영지침을 미제정한 기관은 개정 표준안(8월 배포)을 반영해 제정하고, 이미 제정한 기관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해 개정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개정 시 권익위에 공문 제출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서울(9.3.~9.4.), 광주(9.10.), 대구(9.11.), 대전(9.12.), 강원(9.24.)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협조(전 공공기관)**

-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간담회** 개최 시 협조(9~12월)

○ 소속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전 공공기관)**

-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지원 요청***

  * 제도 정착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회, 국립대학교 및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필요시 적극적으로 교육 지원 요청

○ 공직자의 **규범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자체 점검 등 실시**(전 공공기관)**

- 수시 배포되는 제도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법 위반 분야 **재발 방지 노력** 등 전개

○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해당 기관)**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법 제18조)

※ 조사기관은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하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국민권익위에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3조)

○ 제도 운영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전 공공기관)**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제고

◇ **내실 있는 실태점검** 및 **자율적 준수 의식 고취**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 넘는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내 시스템으로 정착

□ 공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령 개정

○ 사회·경제적 상황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시의성 있는 청탁금지법 개선·보완 등 정비**

-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한 **음식물 가액 범위 현실화**('24.8.27. 시행령 개정·시행)

※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수수 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 : (기존) 3만원 이하 → (개정) 5만원 이하

□ 실태점검을 통한 운영 내실화

○ '24년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제도 운영 미흡기관 등 대상 시정조치 통보**(~7월) 및 **이행여부 점검·조치**(~9월)

※ 시정조치 미이행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 반영(감점) 등으로 이행력 확보

【 '24년 청탁금지법 위반실태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 】

· **(부정청탁 금지 위반 사례)** 지자체 공직자 A는 같은 지자체 소속 공직자 B로부터 특정 건축사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사례)** 학교 운동부코치 A는 운동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식사비, 명절 선물 기프티콘, 대회 숙식비 등 약 47만원 상당 금품등 수수

· **(신고사건 부적정 처리 사례)** 지자체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 B, C로부터 국내외 골프 여행 비용, 식사·음주 향응 등 약 68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지자체에서 A, B, C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하였으나, 제공자 B, C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청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언론보도·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신고처리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개선 요구(수시)

※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 사례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부적절 사건 처리 경위 등 현지점검 실시 후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실효성 담보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법 오인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 및 **긍정적 법 인식 확산 도모**

- 금품·향응 등 **주요 취약시기별***로 빈발질의, 위반유형 등에 대한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

  * 설·추석 명절, 학교 입학·졸업, 공직선거, 연말·연시 등 금품수수 빈발 시기

-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위반사례, 해석기준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예방활동 전개(수시)

○ **청탁방지담당관 등 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태료·징계 사례, 신고 처리 방법, 우수사례 공유 등 **맞춤형 교육 실시**(수시)

※ 기관 유형별 청탁방지담당관 및 감사·윤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간담회 등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전 공공기관)**

- 소속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9월)

○ 청탁금지법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협조(해당 공공기관)**

- 신고처리 부적절 사례, 제도 운영 미흡사례 등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9월)

○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홍보 적극 실시(전 공공기관)**

- 설·추석, 학교 입학·졸업,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시기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배포 및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 협조(수시)

3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유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행위기준 재정립

□ 내실 있는 제도 운영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선물의 **가액범위 상향**('23.9.),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삭제**('22.6.)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기관별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반영**

< 행동강령 행위기준의 주요 개정사항 >

구분	행동강령 행위기준	개정일
선물수수 가액범위 상향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금액상품권 제외)	'23. 9.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22. 6.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 신설	■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9. 1.

○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원)** '24년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원**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 운영 역량 강화

○ **(행위기준 개선)**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업무담당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행동강령 **제도운영 보완사항 발굴·개선**

※ 행동강령 개념이 모호하거나 규정 적용상 어려움이 있는 행위기준에 대해서는 업무편람 등을 통해 해석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력 제고

-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행동강령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해석기준, 위반사례 등을 즉각 전파

※ (예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이슈화될 경우, 예산 목적외 사용 관련 행동강령 해석기준·위반사례를 보도자료·SNS 등을 통해 전파

□ 민생현장 속 이행점검 강화

○ **(수시점검)**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특혜소지**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동강령 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

- 위반사항을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관계자 징계 등 조치** 요구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현안 대응 사례】

• ○○시 지자체장 경조사 통지 제한 위반('23.3.), ◇◇시 지자체장·지방의원 수영장 이용 특혜 의혹('23.4.) 언론보도·이슈화

즉시 조사해 위반사실 확인·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전체 공공기관 대상 경조사 통지('23.4.) 및 문화체육·휴양시설 이용('23.5.)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공유

○ **(취약시기 점검) 명절 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를 전후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 집중 점검(9월)

※ 언론 등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이슈 발생 기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 부패행위 발생 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주요 적발사례】 : 해당기관에 통보 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군청 과장급 공무원이 하급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한우 · 과일 선물세트 수수**

✔ ◇◇군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 수수**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전 공공기관)**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① 자체 행동강령 개정 전문, ② 신·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국민권익위에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시정·권고사항 신속히 반영

○ 권익위에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이행점검** 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후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이행점검 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권익위에서 공문으로 안내한 사항 적극 활용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23.4.)**

✓**'문화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23.5.)** 등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전 공공기관)**

- 특히,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례·사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징계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및 불법적 비위 관행 차단

○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을 청렴포털에 입력(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장은 반기별로 기관별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자료를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권익위에 제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30조

- 특히,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24년 상반기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입력기간 : ~ '24. 9. 11.

2 교육·협력을 통한 공직사회 자율적 청렴 역량 강화

1 충실한 법정 청렴교육 관리

◇ **효과적인 교육지원**으로 법정 청렴교육 이행률 제고 및 청렴 의식 형성 강화

□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

○ **(부진기관 사후관리)** '23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 실적 부진기관 참석률 제고를 위해 **권역별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11월)

* 교육환경 분석, 교육실적 부진 사유 및 개선 계획 등 포함

※ '23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발표(9~10월 예정)

○ **(현장점검·컨설팅)** 교육 이수율이 낮은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및 관리자 특별교육 미참석 기관** 등 대상 현장 방문점검 및 컨설팅 추진(~12월)

○ **(교육여건 열악 기관 지원)** 소규모 기관, 신규기관 등 대상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 개설**(~12월) 및 **기관 자체교육 운영 지원****

* 구루미, 줌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청렴교육 실시

**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등 안내, 자체 교육용 청렴교육 콘텐츠 제공 등

[협조 요청 사항]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전 공공기관)**

※ 「'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은 별도 공문 송부 완료(2월)

※ 참고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각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실적 부진기관 **이행계획서 제출 및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협조**(해당 공공기관)**

※ 부패방지교육 실적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요청(9월)할 예정이며 관리자 특별교육은 11월 경 실시 예정

○ 부패방지교육 실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시 협조(해당 공공기관)**

○ 소규모 기관 등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 참석 요청(12월, 해당 기관)**

2 분야별·대상별 교육 과정 운영

◇ 공직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한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
◇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한 기관의 **자체 청렴교육 지원**

□ 집합·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운영

○ **(집합교육)**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세대별·유형** 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 **(대면교육) 대면교육 의무자**(고위직·승진자·신규자)별 **공직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9월 이후 총 11회 예정)

※ 교육 흥미 제고를 위하여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K-콘텐츠 청렴특강 편성(9.24., 세종)

- **(맞춤 교육)** 청렴업무 담당자, **부패 취약분야**(인사·계약 등)·교육 분야 종사자 등 **공직 유형별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9월 이후 총 4회 예정)

- **(권익구제)** 국민과 밀접한 **고충민원·권익개선·행정심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인 **권익구제 교육과정** 운영(9월 이후 총 6회 운영 예정)

※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참고3(연수원 하반기 교육일정, 9월 이후) 참조

○ **(사이버교육)** 연수원 나라배움터(acti.nhi.go.kr)에서 **이러닝 운영**(~12월)

-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23년 신규) 등 총 27개 과정(수어과정 포함)

□ 강사 양성·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렴교육 지원

○ **(강사 양성)** 각 공공기관의 자체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청렴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내부강사·전문강사 양성**

※ 청렴교육 **내부강사·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은 **부패방지교육**으로 **인정**

- **(내부강사)** 기관 업무 이해도가 높은 청렴업무 담당자를 내부강사로 양성, 수료 시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가능**(해당 연도에 한정)

- **(전문강사) 강의시연 평가** 등 엄선된 절차를 통하여 반부패 법령·지식 및 강의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선발**('24.8월 기준 총 451명 양성)

  ※ 전문강사 양성 후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최신 반부패 동향 및 강의기법 등 **보수교육 과정**을 매년 **운영**

○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용과 **기관 자체교육**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이러닝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배포**

※ 구체적인 콘텐츠 내역은 참고2(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 참조

[협조 요청 사항]

○ 매월 연수원 **집합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시 소속기관 통보 및 **적극 홍보(전 공공기관)**

※ 연수원은 매월 초 공문을 통해 다음달 교육 과정 및 교육생 모집 안내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고위직·승진자·신규자 등) 및 교육 희망자에 대한 **청렴연수원 교육 파견 등 협조(전 공공기관)**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 강사(내부강사·전문강사) 적극 활용(전 공공기관)**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전문강사 검색 및 강의 요청 가능

○ 자체 청렴교육 시 **청렴연수원 교육콘텐츠 활용(전 공공기관)**

※ 교육콘텐츠는 연수원 홈페이지·유튜브(권익비전)을 통하여 활용하거나, 연수원에 공문을 통하여 요청

3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이행실태 점검 강화**, 부정수급 **취약분야 자체점검 강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이행실태관리 점검)**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대상**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 점검**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후속점검 및 미이행 처분 이행 권고**

※ '이행실태관리 실적' 제출 내역을 평가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에 감점 반영(최대 3점)

○ **(자체점검 강화)** 기관별 취약분야 **자체점검 노력** 및 환수·제재부가금 **처분 실적**을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

※ '자체점검 실적'(80점),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실적'(20점) 총 100점 (청렴노력도 평가에 10점 반영)

※ 기관·법령·지원금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을 청렴포털에 게시(6.25.)
: 청렴포털(www.clean.go.kr) → 공지사항 → '23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점검 결과' 참고

○ **(취약분야 집중점검)** 국민권익위와 감독기관인 해당기관은 부정청구 빈발분야, 유사사례 발생 가능 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 등 **집중점검 실시**

□ 법령 개정안에 대한 홍보

○ 개정된 공공재정환수법('24.9.27 시행)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 유도

* (개정 내용) 부정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도입 등

□ 신고자에 대한 보·포상금 지급·확대 추진

○ 공공기관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신고자에 대한 추천 확대**

* (보상금) **권익위 외 타기관**(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신고 건도** 보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가능**(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공공기관 재산회복, 제도개선, 관련자 처벌 등 **포상금 지급기준 부합시 지급 가능**

[협조 요청 사항]

○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처분 관련 **자료 제출 협조(해당 기관)**

※ '24년 상반기 부정수급 제재처분 현황 제출 요청(~8.19.까지)

○ 후속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해당 기관)**

○ 점검결과 **미흡분야 이행 권고 시 이행(해당 기관)**

○ **기관별 자체점검 적극 실시(전 공공기관)**

○ 권익위에서 **취약분야 합동점검 요청 시 참여(해당 기관)**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주요 내용 등을 각 기관의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하여 홍보(전 공공기관)**

○ 권익위 외 타기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자 권익위에 적극 추천(전 공공기관)**

4 국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 기반 강화

□ 신고 활성화 제도 기반 강화

○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주체 확대)** 신고자 보호·지원 사항의 안내 주체가 '권익위'에서 '조사·수사기관, 공공단체' 등까지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24.8.7. 시행)

○ **(운영지침 표준안)** 최신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24년도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운영지침 표준안 마련·배포(9월중)

○ **(구조금 손해배상 청구 대위)**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자의 재산 관련 자료를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의2, '24.8.7. 시행)

※ (요청 자료)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자료, 토지 및 임야 대장 등

○ **(운영현황 실태조사)** '23년도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 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

※ '23년도 기준 공익신고 접수건수 742만건, '22년 대비 31.5% 증가

□ 신고자 보호 철저

○ **(비밀보장) 신고 조사과정, 신고성 민원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 비밀 유출**에 대한 **주의 및 대응 강화**

* 누구든지 신고자등(신고자, 협조자)임을 알면서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 불가

- 신고사건 조사 및 관련 문서의 내·외부 시행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처리·공개범위 관리 등 철저

○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법령 준수

○ **(조치요구 이행)**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불이익조치자 징계 등 조치 필요

* 조치 요구사항 미이행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사항으로 반영됨

□ 적극적인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사건검토 단계부터 지급된 보상금 상환까지** 체계적 운영

- 쟁점이 복잡한 주요 안건은 **중점심의 안건으로 지정**하고, 신고접수·조사·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확·신속하게 사건처리

※ 보상금 결정 절차 : 해당 부서 검토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

- 상환 대상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통보, 상환 지연기관에 대한 현지 점검** 등 상환액 수납을 위한 상시 관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 의무 규정

○ **(포상금)** 추천 대상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 제도화** 및 **서훈 추천·자체 표창수여** 등 포상방안 다각화

- **권익위**에서 공공기관의 추천사례에 대한 **공익기여도 등을 사전검증**하여 포상의 공정성 강화

※ '24년 상반기 포상은 8월에 결정, 하반기 포상 추천 요청은 10월 예상

- 행정안전부 주관 **「상훈법」에 따른 서훈 추천** 및 권익위 자체적으로 선정·수여하는 **'위원회 표창'** 등 비금전적 포상 확대

※ '24년 부패·공익신고자 포상을 위한 위원장 표창 5점 추진 및 적극적으로 포상을 추천한 기관담당자는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포상 시상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신고자 대상 **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한 안내 방안 마련·시행(해당기관)**

※ 대상 기관 : 조사·수사 기관, 공익침해행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 '24년도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운영지침 표준안 내용 **기관별 자체 규정에 반영 요청(해당기관)**

○ 구조금 손해배상청구 대위 행사를 위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해당기관)**

○ 공익신고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 및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제도 적극적 운영(해당기관)**

○ 기관 내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모든 기관)**

○ 신고자 보호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불이익조치자 징계 등 **위원회의 조치 요구사항 이행(해당 기관)**

○ 부패·공익신고 보·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건에 대한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해당기관)**

※ 신고서, 조사 결과 통지서, 처분 결정일자, 실제 환수내역, 불복구제절차 진행여부, 보·포상금 지급 여부 및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자료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기한준수 등 체계적 관리(해당기관)**

- 상환 통보 사건 관리 및 예산편성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상환 처리(상시)

※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징수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3항)

- 상환 연체기관 현지점검 시 소관부서 연락 등 요청시 협조(11~12월)

○ 권익위에서 **포상금 사례 추천 요청시** 기관별로 사전검증을 통해 **우수사례*** **적극 추천 (모든 기관)**

*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국가·지자체 수입회복, 처벌이 나왔으나 내부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

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운영

◇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 비위면직자등 관련 **정보의 청렴포털 자료입력**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안내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5. 시행)으로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화** (법 제82조 제2항, 제6항)

※ 대상자에게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문 직접 교부 또는 등기 발송

○ **(제한 대상·기관 정비)** 취업제한대상자에 **집행유예 받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업제한기관 중 **'공공기관'에 국·공립학교까지 포함**하여 규정 명확화(법 제82조 제1항, 제2항)

○ **(제한 기산점 구체화) 벌금형 및 집행유예 관련** 취업제한기간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구체적으로 명시**(법 제82조 제3항)

< 참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 입력 자료 관리 및 교육 강화

○ **(자료관리)**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에 입력·제출한 각급 기관의 **비위면직자등 발생현황 자료 점검·관리 강화**(연 2회, 상·하반기)

※ 하반기 입력 안내: 202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자료 입력(전 공공기관, 관련 공문 기 시행, **입력 기한(~9.11.)**)
미제출 시 '24년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

※ (청렴포털 미입력 사례) ○○군수가 뇌물수수로 집행유예형 확정 후 당연퇴직 되었으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권익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되어 고발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등 **당사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전 공공기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안내(운영지침, 별지4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취업제한제도 공문 안내

- 대상자에게 안내한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는 5년간 보관

※ 취업제한제도 안내 미비로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민원, 소 제기 등 문제 제기 가능성 차단

○ 상·하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를 기한 내 청렴포털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징계처분 사유서, 판결문, 안내 관련 증빙)도 빠짐없이 **입력(전 공공기관)**

※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로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단 제출

○ 공공기관 채용공고문 채용규정 제한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공고(전 공공기관)**

○ 퇴직 전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자가 재취업을 위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시**(시행령 제89조)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권익위에 유권해석 받은 후 처리**(전 공공기관)**

○ 권익위가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 시 **사실관계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하고, 취업실태 현장점검 및 위반자 후속조치(해임·고발 요구)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6 공정 · 신속한 신고사건 조사 및 관리

◇ 신속한 사건처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대국민 신고창구' 역할 강화**

□ 이첩·송부한 신고사건 신속 처리

○ 부패·공익신고 조사 부서간 협업하여 **'사후관리 점검팀'**을 **구성**하고, 조사기관 등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 하도록 관리 강화

- **(이첩·송부사건)** 이첩·송부한 신고사건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조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조사기관의 조사진행 상황 확인 및 필요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 독려

- **(장기 미회신 사건)** 이첩·송부 후 6개월 이상 조사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 권익위에서 **반기별로 공문 발송** 및 **기관방문 시 적극 협조**

※ 2년 이상 미회신 사건 담당자 명단, 처리기한 등 구체적 처리계획 징구

□ 청렴포털을 통한 공공기관 신고사건 관리 강화

○ 청렴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이 접수한 신고사건 **신속·정확하게 처리**

- 신고자는 **신고사건 처리 단계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신속하게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신고사건 관리 요망

※ 청렴포털은 각급 기관 소관 반부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4년 1,000여개 기관이 이용 중임

[협조 요청 사항]

○ 조사기관은 이첩·송부받은 신고사건을 **법정 기한(60일) 내에 처리**하고, 조사 **결과도 기한(종료 후 10일) 내 통보(해당기관)**

- 조사기간 연장 시 권익위에 사유 및 기간 통보

※ 반기별 점검 기한까지 미회신 할 경우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최대 2점 감점

○ 청렴포털 기관운영자 및 신고처리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해당기관)**

7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권고 과제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효과 확산 기여

□ 공정사회 구축 및 예산 낭비 방지

○ **(공정사회 기반 구축)** 국민 생활 속 불공정·민관유착 등 **구조적 부패 관행 개선**

< '24년 공정사회 구축 분야 추진 과제 >

연번	과 제 명	권고시기
1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권고완료 ('24.6.)
2	공공부문 성비위·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선	권고완료 ('24.7.)
3	법원의 공공·민간재산 집행 경매제도 개선	하반기
4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하반기
5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하반기

○ **(예산낭비 방지)**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 지원·집행의 누수 방지**

< '24년 예산낭비 방지 분야 추진 과제 >

연번	과 제 명	권고시기
1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완료 ('24.4.)
2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	하반기

□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이행방안 협의 및 대체방안 논의를 위해 **기관별 컨설팅** 실시
- 이행률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현지 이행실태 점검** 실시(11월)
-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사례 등은 언론 공표**

○ **(장기 미이행 과제)** 권고 후 조치기한이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행률이 저조한 과제에 대한 **전수 점검 실시**(계속)

- 점검 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검토**
- 환경 및 정책변화 등으로 시의성 떨어지는 과제는 관리종결 검토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권고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능 개선 후 시스템 재개통**(12월 예정)

- 권고과제 이행관리 중심으로 기능 재편(권익위: 권고과제 등록 - 권고 대상기관: 이행실적 등록)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범 개통 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 개통 추진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전 공공기관)**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통보 시 점검결과 필히 제출**(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참 고 자 료

1 '24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부산광역시	기장군	44	전라남도	목포시
2	대구광역시	군위군	45	전라남도	여수시
3	경기도	고양시	46	전라남도	광양시
4	경기도	성남시	47	전라남도	구례군
5	경기도	부천시	48	전라남도	보성군
6	경기도	남양주시	49	전라남도	장흥군
7	경기도	안양시	50	전라남도	강진군
8	경기도	평택시	51	전라남도	해남군
9	경기도	시흥시	52	전라남도	영암군
10	경기도	광주시	53	전라남도	함평군
11	경기도	군포시	54	전라남도	영광군
12	경기도	하남시	55	경상북도	포항시
13	경기도	오산시	56	경상북도	김천시
14	경기도	양주시	57	경상북도	구미시
15	경기도	구리시	58	경상북도	영천시
16	경기도	의왕시	59	경상북도	상주시
17	경기도	양평군	60	경상북도	문경시
18	경기도	동두천시	61	경상북도	경산시
19	경기도	가평군	62	경상북도	의성군
20	경기도	연천군	63	경상북도	청송군
21	충청북도	제천시	64	경상북도	영양군
22	충청북도	보은군	65	경상북도	고령군
23	충청북도	옥천군	66	경상북도	성주군
24	충청북도	영동군	67	경상북도	칠곡군
25	충청북도	진천군	68	경상북도	예천군
26	충청북도	음성군	69	경상남도	진주시
27	충청남도	천안시	70	경상남도	통영시
28	충청남도	아산시	71	경상남도	사천시
29	충청남도	서산시	72	경상남도	김해시
30	충청남도	논산시	73	경상남도	밀양시
31	충청남도	계룡시	74	경상남도	양산시
32	충청남도	금산군	75	경상남도	함안군
33	충청남도	부여군	76	경상남도	창녕군
34	충청남도	청양군	77	경상남도	남해군
35	충청남도	예산군	78	경상남도	하동군
36	전라북도	군산시	79	경상남도	산청군
37	전라북도	익산시	80	경상남도	거창군
38	전라북도	남원시	81	강원ㅌ도	원주시
39	전라북도	김제시	82	강원도	태백시
40	전라북도	완주군	83	강원도	속초시
41	전라북도	진안군	84	강원도	삼척시
42	전라북도	무주군	85	강원도	영월군
43	전라북도	임실군	86	강원도	양양군

2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교육 콘텐츠 목록

연번	주요 내용		개발 시기
1		**【청렴 종합병원】 - 영상물**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양한 에피소드로 각색하여 법령 이해도 제고 (총 4편, 각 3분)	'23년
2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 영상물** -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를 시트콤 형식으로 표현하여 일상 속 청렴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23년
3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 - 영상물** - 직장 내 부패 유형인 '갑질' 사례를 다룬 브이로그(V-log) 형태의 영상물을 통해 갑질 근절 필요성 강조	'23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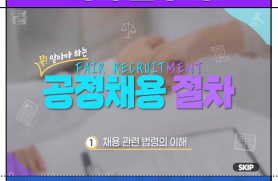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 이러닝** - 채용 관련 법령 및 채용 절차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4차시)	'23년
5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이러닝** -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 등 현장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22년
6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 영상물**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10개 행위 기준을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	'22년
7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①, ②】 - 영상물** - 이름도 비슷하고 인접한 두 국가(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청렴도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	'22년
8		**【부패로 큰코다친 나라들, 뇌물과 부패방지법】 - 영상물** - 나라를 뒤흔든 세계 각국의 희대의 부패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해외의 반부패 입법 사례 소개	'22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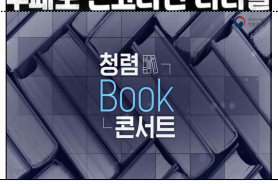	**【청렴 북 콘서트】 - 영상물** - 문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렴 관련 도서의 내용을 소개하여 청렴을 쉽게 이해(총 5편)	'21년

3 '24년 하반기 청렴연수원 교육 운영 일정(9월~)

월	과정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9월 (12회)	청렴윤리경영 관리자 과정	4기	40명	9.2.(월)~9.3.(화)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5기	40명	9.3.(화)~9.4.(수)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5기	300명	9.3.(화)~9.5.(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8기	40명	9.4.(수)
	인사 담당자 과정	2기	40명	9.5.(목)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5기	40명	9.5.(목)~9.6.(금)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3기	40명	9.9.(월)~9.13.(금)
	승진자 과정(공무원)	7기	40명	9.10.(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6기	40명	9.24.(화)~9.26.(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서울)	9기	40명	9.25.(수)
	신규자 과정(공무원)	7기	40명	9.26.(목)~9.27.(금)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3기	40명	9.27.(금)
10월 (8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5기	70명	10.1.(화)
	승진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8기	40명	10.8.(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7기	40명	10.15.(화)~10.17.(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0기	40명	10.16.(수)
	신규자 과정(공직유관단체 직원)	8기	40명	10.21.(월)~10.22.(화)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	6기	40명	10.24.(목)~10.25.(금)
	내부강사 양성과정(온라인)	6기	300명	10.29.(화)~10.31.(목)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4기	40명	10.30.(수)~11.1.(금)
11월 (9회)	승진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9기	40명	11.4.(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	8기	40명	11.5.(화)~11.7.(목)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1기	40명	11.6.(수)
	전문과정 합격자 강의역량 향상과정	1기	30명	11.11.(월)~11.12.(화)
	계약 담당자 과정	4기	40명	11.14.(월)
	신규자 과정(공무원)	9기	40명	11.18.(월)~11.19.(화)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	6기	40명	11.19.(화)~11.20.(수)
	교육행정직.교직원 과정	3기	40명	11.22.(금)
	청렴리더십(고위직) 과정	12기	40명	11.27.(수)
12월 (4회)	신규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10기	40명	12.2.(월)~12.3.(화)
	승진자 과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	10기	40명	12.4.(수)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4기	40명	12.6.(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6기	70명	12.10.(화)

붙 임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중점과제 1】 지방 일선 현장의 불공정·부패 관행 개선			
①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수당 자체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12월	해당기관 (231개 지자체)
②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자료(집행부 동반) 요구 시 제출	~12월	전 지자체
③	이해충돌 방지제도 취약분야 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12월	해당 기관
④	'24년 상반기 처분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관리 점검	반기별	전 공공기관
⑤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후속점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⑥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점검결과 미흡분야 이행 권고 시 적극 이행	수시	해당 기관
⑦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현황 제출	연1회	해당 기관
【중점과제 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도 향상 촉진			
①	설문조사 명부, 부패사건 징계자료 등 보완	~9월	평가 대상기관
②	하반기 현지점검 협조	9~10월	점검 대상기관
③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	10월초	평가 대상기관
④	청렴노력도 정량지표 1차 평가 이의신청	10월 예정	평가 대상기관
⑤	부패사건, 언론보도 사항 등 확인·소명	~11월	평가 대상기관
⑥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업데이트	12월	평가 대상기관
⑦	기관별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12월	평가 대상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중점과제 3】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①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 적극 실시 및 결과 회신	~10월	해당 기관
②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도개선 권고 관련 이행점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4분기	전체 기관
③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처리 협조	연중	해당 기관
1. 현장에 기반한 반부패 행위규범 정비·운영			
[1]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제고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12월	전 공공기관
②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참여	9월	전 공공기관
③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조사 협조	9~12월	전 공공기관
④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자체 점검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연중	전 공공기관
⑥	법 위반행위 신고 사건 조사·처리 협조	연중	해당기관
⑦	제도운영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등 의견 공유	연중	전 공공기관
[2]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제고			
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9월	전 공공기관
②	청탁금지법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협조	~9월	해당 기관
③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홍보 적극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	제·개정 완료시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⑤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9월	전 공공기관
2. 교육·협력을 통한 공직사회 자율적 청렴 역량 강화			
[1] 충실한 법정 청렴 교육 관리			
①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참여 협조 * (규범별)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대상별) 고위직·승진자·신규자 등 대면교육 의무자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부패방지교육 이행계획서 제출 협조	~9월	해당기관
③	부패방지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협조	11월 예정	해당기관
④	부패방지교육 실적점검 및 컨설팅 협조	~12월	해당기관
⑤	소규모 기관 등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 참석 협조	~12월	해당기관
[2] 분야별·대상별 교육 과정 운영			
①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안내 및 홍보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②	교육생에 대한 청렴연수원 교육 파견 등 협조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③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 강사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④	자체 청렴교육 시 청렴연수원 교육콘텐츠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3.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			
①	'24년 상반기 처분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관리 점검	반기별	전 공공기관
②	후속점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	수시	해당 기관
③	점검결과 미흡분야 이행 권고 시 적극 이행	수시	해당 기관
④	기관별 자체점검	~9월	전 공공기관
⑤	취약분야 합동점검	연중	해당 기관
⑥	개정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적극 홍보	하반기	전 공공기관
⑦	권익위 외 타기관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기준 대상자를 권익위에 적극 추천	연중	전 공공기관
4. 국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①	신고자 대상 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한 안내 방안 마련·시행	하반기	해당 기관
②	'24년도 부패·공익신고 운영지침 표준안 기관별 자체 규정에 반영	하반기	해당 기관
③	구조금 손해배상 대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시 협조	하반기	해당 기관
④	신고자 비밀보장 등 적극적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하반기	해당 기관
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통보 사건 관리	연 4회	해당 기관
⑥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연체기관 현지점검	11~12월	해당 기관
⑦	추천 요건에 부합하는 포상 대상 사례 적극 추천	10월경	모든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청렴포털 입력 철저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채용공고 시 비위면직자등 채용제한사유 명시	수시	전 공공기관
④	퇴직 전 공공기관 취업제한 여부 확인 당부	수시	전 공공기관
⑤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자료제출 및 후속조치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6. 공정·신속한 신고사건 조사 및 관리			
①	장기미회신 사건 사후관리 강화	반기별	해당 기관
②	청렴포털 담당자 등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	상시	해당 기관
7.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①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2 부서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총괄과	김종혁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이행 실적 점검 및 관리	044)200-7616	044) 200-7939
청렴정책총괄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파트)	윤지현	법령정비, 실태조사 및 유권해석	044)200-7674	044) 200-7939
	이예정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79	
	권나라	교육·홍보, 설명회 및 유권해석	044)200-7681	
청렴조사평가과	김기용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2	044) 200-7940
	김혜진		044)200-7634	
	김일문		044)200-7633	
	김소리		044)200-7638	
	연나영		044)200-7636	
	김선미		044)200-7635	
	안영인		044)200-7637	
	윤종선		044)200-7639	
부패영향분석과	우명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044-200-7656	044) 200-7941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탁금지 제도과	한세근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200-7703	044) 200-7944
	권문택	청탁금지법 교육	044)200-7704	
	정나리	청탁금지법 홍보	044)200-7708	
	박선미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044)200-7706	
	오정헌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044)200-7707	
행동강령과	정철우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5	044) 200-7942
	유어진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0	
	이종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044)200-7677	
	고명관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044)200-7683	
	서정민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044)200-7685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	이진아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등	044)200-7127	044) 200-7964
	배영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등	044)200-7711	
	김보배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처리 등	044)200-7291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심사기획과	박종혁	위험근무수당 관련 실태조사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200-7692	044) 200-7943
	임성순	위험근무수당 관련 실태조사	044)200-7688	
	홍원태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89	
	이태완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98	
	신희석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한수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부패심사과	손승목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044)200-7731	044) 200-7946
	김회성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044)200-7725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임한나	공공재정환수 법·제도 운영	044)200-7644	044) 200-7977
	최현민	교육·컨설팅	044)200-7582	
	김선일	이행실태관리 점검, 후속 점검	044)200-7650	
	김시준	청렴노력도 평가, 홍보	044)200-7646	
보호보상 정책과	문호준	부패·공익 신고 표준안, 법·제도 운영	044)200-7753	044) 200-7948
	강현희	부패·공익 신고 법·제도 운영	044)200-7754	
신고자 보호과	조수연	신고자 보호사건 관련 평가	044)200-7779	044) 200-7947
	정병학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안내	044)200-7773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신고자 보상과	오병철	포상 추천, 보상금·구조금 사건 처리	044)200-7745	044) 200-7947
	이주현	지침 정비, 보상금·구조금 사건 처리	044)200-7744	
	류지연	보상금 상환, 보상금·구조금 사건 처리	044)200-7740	
제도개선 총괄과	전이슬	제도개선 업무 총괄	044)200-7216	044) 200-7921
	진정인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044)200-7219	
청렴연수원	구교전	고위직 과정 운영	043)901-6132	044) 200-7973
	김유현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과정 운영	043)901-6149	
	김명혜	신규자 과정 운영	043)901-6133	
	김성래	내부강사 양성과정 운영	043)901-6134	
	나은정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분야 종사자 과정 운영	043)901-6143	
	배유진	전문강사 양성과정, 보수교육 운영	043)901-6146	
	장보정	청렴교육 콘텐츠 기획, 개발	043)901-6131	
	성장미	권익구제 교육 과정 운영	043)901-6121	
	이자영	사이버 교육 과정 운영, 사이버코스웨어 제공	043)901-6118	